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16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담당변호사 조상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담당변호사 손병기)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1. 10. 27. 원고에게 “3억 원을 2022. 8. 31.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1년 제569호).

나. C은 2022. 2. 5. E으로부터 ‘인천 서구 F건물, G호’를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C은 원고와 사이의 ‘2021. 10. 27.자 공정증서’의 변제기가 지나자 2022. 9. 2. 원고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되, 2022년 9월 말일부터 2023년 4월 말일까지 8개월간 매월 말일에 3,3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22년 제7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C은 ‘논산시 I 임야 31240㎡’ 중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 9. 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C은 2022.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 중 8,000만 원(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22. 9. 19. E에게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바. E은 2024. 3.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1,730,426원을 공탁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년 금 제495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원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공탁자’는 E을 의미한다).

- 1) 공탁자와 C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은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였다.
- 2) C은 2022. 2. 9.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자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 8,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J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 3) C은 J은행으로부터의 대출원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 원

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22. 9. 19.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공탁자에게 발송하여 도달하였다.

4)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로서 C이 이미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23. 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인천지방법원 2023타채 502597)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공탁자에게 2023. 2. 15. 도달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단11381) 2023. 7. 27. 인용되었고,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본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6) C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24. 2. 15.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고, 공탁자는 질권자인 J은행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24,427,334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탁자는 C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면서 미납한 관리비 2,169,240원과 C의 부주의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및 수수료 등 1,673,000원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 51,730,42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다만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수령불능이고, 가처분채권자(원고)가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공탁금에 유효하게 전이되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을 상대로 2억 6,4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3. 1. 10. 기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액은 105,347,073원에 이른다(C의 2022. 9. 30.자 3,300만 원, 2022. 12. 2.자 8,000만 원, 2023. 1. 9.자 5,000만 원 변제금을 이자 및 원본에 충당한 후의 잔액).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 기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대상채권의 양도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양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지인인 K은 2022년 1월경 “이복형제인 C이 전국 병원 및 호텔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1억 원(= 2022. 1. 31. 5,000만 원 + 2022. 3. 8.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2년 9월경 C 소유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2022년 9월경 C이 “급히 식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대상채권을 담보로 7,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빌려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도받은 후 C에게 합계 6,500만 원(= 2022. 10. 6. 2,000만 원 + 2022. 10. 15. 1,000만 원 + 2022. 11. 1. 3,000만 원 + 2022. 11. 9.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이처럼 C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로부터 식자재 구입 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C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황 및 자력에 대한 C의 말을 믿은 나머지 담보를 제공받은 후 금전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및 그 채권액이 이 사건 대상채권(8,000만 원)을 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원고는 C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 별지 ‘원고의 2023. 12. 5.자 준비서면 중 일부’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적극채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은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제공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채무 변제력을 가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기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의 C에 대한 기존의 1억 원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담보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체적인 피담보채무가 어떤 것인지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한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C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결국 C 소유 토지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처럼 채무 변제가 상당 기간 지체되던 상황이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일(2022. 9. 8.)로부터 불과 5일 뒤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피고 스스로 “C이 식자재 구입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급히 요청하였다”라고 금전 대여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상채권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C에게 다시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관)에게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

목 록

1.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E(M생) 사이에 2022. 2. 5.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C이 E을 상대로 가지게 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8,000만 원.
2. 아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년 금 제495호
 - 공탁일 : 2024. 3. 7.
 - 공탁자 : E
 - 피공탁자 : B
 - 공탁금 : 51,730,426원 끝.

[별지]

원고의 2023. 12. 5.자 준비서면 중 일부

1.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C의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조회내역

부동산등기기록(소유권) 존재 내역				
조회기준일 : 2022. 9. 1. ~ 현재(2023. 9. 22.)				
조회대상자				
사건번호 : 2023가단116554				
연번	등기부 구분 (폐쇄/현행)	부동산 종류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1	현행	토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답 2450㎡
2	현행	토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답 1197㎡
3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 294㎡
4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 1260㎡
5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 1706㎡
6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답 1078㎡
7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대 869㎡
8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임야 65351㎡

부동산등기기록(소유권) 존재 내역				
조회기준일 : 2022. 9. 1. ~ 현재(2023. 9. 22.)				
조회대상자				
사건번호 : 2023가단116554				
연번	등기부 구분 (폐쇄/현행)	부동산 종류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9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임야 5092㎡
10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도로 7㎡
11	현행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임야 3918㎡
12	현행	토지		충청남도 논산시 전 2380㎡
13	현행	토지		충청남도 논산시 임야 31240㎡

2. 위 순번 7 내지 11의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인 2021. 8. 11.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부동산등기부등본).

3. 위 순번 1 내지 6의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C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합계가 582,765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6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7 개별공시지가).

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가액 (원)	공유지분 (분자)	공유지분 (분모)
1	고양시 덕양구 N동	O	답	2450	142,200	357,573	52,942,879,080	51,583,295,836,800
2	고양시 덕양구 N동	P	답	1197	142,200	202,635	126,355,320	106,138,468,800
3	공주시 Q리	R	전	294	81,300	1,756	1,034,633,600	14,079,294,028,800
4	공주시 Q리	S	전	1260	81,300	7,528	1,034,633,600	14,079,294,028,800
5	공주시 Q리	T	전	1706	57,600	7,221	1,034,633,600	14,079,294,028,800
6	공주시 Q리	U	답	1078	76,400	6,052	1,034,633,600	14,079,294,028,800
						582,765		

4. 위 순번 12 내지 13 각 부동산의 경우 공유지분 가액 합계는 169,101,500원이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갑 제7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 등본, 갑 제7호증의 3 개별공시지가), 이 법원의 V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J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3억 원,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약 4억 6,000만 원 등이 있었고, 그 외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현황(갑 제7호증의 1, 2)에 비추어 C은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에 대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	개별공시 지가 (㎡/원)	가액 (원)	공유 지분	근저당권
11	논산시 Y리	Z	전	2380	75,500	44,922,500	1/4	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A조합 (부동산 전체) ②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B조합 (부동산 전체)
12	논산시 Y리	AC	임야	31240	15900	124,179,000	1/4	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 (C 공유지분)
						169,101,500		

끝.

1) 원고는 '2024.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을 '2022. 9. 15.경'이라 기재하였으나, 을 제5호증의 1(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이 '2022. 9. 13.'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